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52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정태호·서영교·한병도

김태년・강준현・조 국

정동영 · 안도걸 · 이건태

정성호 · 김주영 · 이학영

이수진 · 임광현 의원

(14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살에 대한 자극적인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그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 관련 정보의 무분별

한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법률 제 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가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그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 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 보통신망"이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 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2조제 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가 자 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아니 하지만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그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 · 해양경찰관서 및 소 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 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 명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 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 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 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 다.

1. ~ 3. (생 략)

② ~ ⑨ (생 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